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4. 2. 1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4일

나. 제출자 : 박정자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4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4. 2. 11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박정자 의원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·국위·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등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-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우리구에 부합하는 국기게양일 지정 등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4조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6조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,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 구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, 국기게양일 지정, 국기 선양사업 추진 법인·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게양일 외에 “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”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, 국기선양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

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,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## (박정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2월 일

발 의 자 : 박정자의원 외 명

### 1. 제안이유

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·국위·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등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라. 구청장은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마.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 및 제8조
-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자치행정과

라. 자치법규안 : 별첨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기”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 선양”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라 한다)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4조(국기의 게양일 등)**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영등포구민의 날(매년 9월 28일)

3.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.

**제5조(국기선양사업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6조(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)**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